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2.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3.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4.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5.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6.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가.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 나.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7.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 | |
|--|-----|
| 1.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 3면 |
| 2.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박효진 의원 발의) | 5면 |
| 3.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효진 의원 발의) | 10면 |
| 4.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천철호 의원 발의) | 12면 |
| 5.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

(김은아 의원 발의)	13면
6.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8면
가.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18면
나.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27면
7.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면
8.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시장제출)	32면
9.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7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과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열세 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1일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정안이 발의 및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사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7호,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조가 2023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산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1조~2조, 시장의 책무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안을 규정 안 제5조,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아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7호,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윤원준 의원님.

○윤원준 의원 예.

○이기에 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원준 의원님께 여쭙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예.

○이기에 위원 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하시고 연간, 전체적으로 한 800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 23만 마리가 충돌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 아산시가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다시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예, 했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5000만 원 미만에 대한 것은 계상을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현재 법이 지난 번에 제정되면서요, 그전에도 이런 사항이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이런 사항이 건물이 올라가면서 또 도로가 뚫리면서 투명 방음창에 대한 조류 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국비 시범사업으로 영인산에도 설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 집행

부가 사전에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 아산시의 대충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 들어갈까를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쭙본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우선 저희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안 했는데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산시에 소재한 국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건물 투명 유리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무늬를 지정해서 건축업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수평무늬도 있고 수직무늬도 있고 전 무늬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창에 사실 창으로 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로 건축을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늬가 여러 가지로 줄무늬를 하든 전 무늬를 하든 여러 가지로 전 무늬로 한다면 시야를 가릴 수가 있고 사실 줄무늬로 계속한다 그러면 표시가 안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어지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층일수록 더 어지러움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아무리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가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예, 저도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이게 전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거보다 용역을 통해서 일정 면적되는, 건물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 유리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어떻게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정한 거는 없는 거예요, 아산시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기에 위원** 과장님께서 일찍 인식을 하셨더라면 윤원준 의원님 방에 와서 새가 박아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한 마리는 저희들이 살렸을 것 같은데 미리 인식을 해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효진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예, 박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51-1호,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산후관리비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출생 지원사업과의 지원기준 통일과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정립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조정 안 제3조, 제4조, 용어 신설 및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신청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51-1호,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박효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전에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산후관리비 지원이 사실 신도시에서는 그동안 12개월 동안 있어서 신도시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절차를 보면 신청일이 기존에 비해서 변화를 했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굳이 바꾸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박효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지원절차에서 지금은 현재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조금 길다 보니까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는 7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가

지고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20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5일까지 받고서 지급하다 보니까 절차가 저희한테 청구하는 절차가 있는데 좀 촉박한 감이 있어 가지고 좀 날짜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행정적인 이유에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요건도 6개월 정도로 하고 다른 지자체처럼, 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이 산후관리비 지원을 6개월로 하는 타 지자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지금 저희 충남에서는 네 군데가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정근 예.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인근 천안시가 24년도 저희랑 같이 6개월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24년도부터 시행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군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천안시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천안시는 차

상위까지는 300만 원, 일반 대상자는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제가 염려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천안, 아산하고 너무 밀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가 차이가 나요.

천안은 50이고 아산은 100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장 안정근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신 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5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천안시 50만 원이면 저희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예.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저희 출산장려금도 지금 6개월 거주기간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산후관리비는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거가 신청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출산장려금은 거주요건을 6개월로 했는데 산후관리비는 왜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장 안정근 이 조레가 바뀐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싹 다 바뀌잖아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아산시 하고 천안시는 너무 밀접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장 안정근 결과적으로 이동인

구가 많더라는 얘기에요, 아산에서 천안 가는 천안에서 아산 오든.

이 부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결과치를 볼 수 있는 장치, 보완장치가 돼 있냐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신청기한을 6개월로 넣었거든요.

○**위원장 안정근** 쉽게 말씀드리면 주소지 이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피드백까지는 저희가 아직, 예.

○**위원장 안정근** 이게 왜 그러냐면 단가가 같으면 천안도 100이고 아산도 100이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러니까 주소를 그거에 맞춰서 옮기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장 안정근**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많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저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장 안정근** 그 부분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거는 조금 저희도 생각하기에 많지 않은 사례는 조금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

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세금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냥 행정에서 감수를 한다?

그 돈을 시민들이 세금을 잘 쓰라고 준 건데 그거를 그냥 감수한다라는 건 행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장 안정근**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지금 지원절차에 대해서 좀 전에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산모들은 되도록이면 처리를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의 일 때문에 다음 달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 다라고 개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에 위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산모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산모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고요.

최소한의 저는 열흘 안에 받는 거를 저는 바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원절차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홍보도, 민원

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받고 있지만 홍보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하실 지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홍보를 어떻게 확대를 해서 산모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가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천안하고 아산하고 똑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에 위원 그런데 그 밖의 지원대상이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안하고 우리 아산하고 항상 모든 것을 지급 금액을 동일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산 정책에 천안보다는 아산이 지금 훨씬 더 월등하게 나온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수급에 대한 이런 게 분명히 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만 해도 사실은 주민등록을 옮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최소한의 1년 정도는 우리가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시민의 세금을 어쨌든 혈세를 통해서 이거를 지급하는데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피드백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로 저희들이 천안에서 우리 아산으로 주민등록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산모들이 이것도 면밀하게 관찰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제안을,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천안, 아산에 산부인과 제일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진이나 홍성, 예산, 이쪽에서 많이 출산을 하러 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그분들이 주소만 이전할 경우도 있고 잠깐, 왜냐하면 우리 아산이 제일

복지는 가장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산후조리비도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그렇고요.

그런 거는 철저히 잘하셔서 앞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꾸준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산부인과에서 많이 협업을 해서 홍보도 지원을 한 분도 다 빠짐없이 아산시민은, 산모들은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까 제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15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3.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효진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상

정합니다.

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예, 박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50-1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 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가정의 범위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 순위 기준을 명확화하여 지원기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명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변경 안 제1조~제7조, 안 제12조~제13조, 가정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다자녀 지원 순위 기준 및 신청 기한의 신설 안 제5조, 별표 및 별지 일부 수정 안 별표 1, 안 별표 제1호, 제4호 서식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주민등록법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50-1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8-1호,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기존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지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고 상위법에도 위반되기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육아휴직 취지에 벗어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육아휴직 기간동안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거주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명

확화 안 제3조2항, 제4조2항, 단서 조항 삭제 안 제4조제2항, 지원대상의 거주조건 완화 안 제3조1항, 제5조1항, 지원신청 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안 부칙 제2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8-1호,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의원님 이 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천철호 의원 예, 동기가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천철호 의원 예, 저희가 처음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이 민원사항에 들어왔어요.

배방에 사시는 분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2개월 후에 다시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을 했다가 다시 또 받으려고 하니깐 ‘1회에 한한다’는 문구 때문에 그것이 지급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아산시 읍부즈만을 통해서 구제 받은 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삭제를 해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9호,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문자폭력 등 주로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2018년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수립되었음에도 아산시에는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 및 홍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

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9호,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김은아 의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후속조치가 안 돼서 여성들이 살해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경찰서에서 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행정에서 이걸 시작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선도적으로 아산시가 가고 있구나.

김은아 의원께서 정말 이걸 잘 제정해 주셔서 다른 시도 이런 걸 따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나름대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데이트 폭력을 길거리에서 봐도 손쉽게 신고도 못 하더라고요, 후폭풍이 복수가 본인한테, 제보자한테 올까봐.

그런 경험을 직접 제 지인이 하다 보니 그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좀 더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김은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를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해서 조례를 만드신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은아 의원 예, 한정해서 이거를 꼭 짚어서 넣은 거는 아니고요.

본 의원이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타 조례랑 많이 정보를 자료 취합을 한 결과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에 대한 상담소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아산시에서 성폭력 상담 센터도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넣었습니다, 위원님.

○김미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넣어도 무방합니다만,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한정하기보다는 그냥 법인과 단체 정도로 해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게 좀 너무 조례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아 의원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안 해도 알 수는 있겠지만 단체나 일반인분들은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좀 더 접하기 쉽지 않을까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상담소 설치기준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이라는데는 단체나 개인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등’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청남도의 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들이 대부분 운영을 맡고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개인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등’에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성 위원 비영리법인에 굳이 한정하는 게 굳이 필요한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사실은 이 기관, 상담소라는 영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보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넣는 게 맞다고,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한정해야겠지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굳이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고 나주시, 관악구, 인천광역시 등 이렇게 굳이 한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한정을 한 건가에 대한 크게 무방하지 않겠습니까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법인과 단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조례안에 이 경우 하고 그다음

문구를 보시면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법자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나만 여쭙볼게요.

과장님 남성들은 어떡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남성이요?

남성도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 관련 법의 근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목에 여성폭력 관련된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법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저희 시설에 다섯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사실은 남성에 관련된 상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위원장 안정근 예,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여성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안정근 남성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 안에 남성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냥 딱 여성으로만, 딱 한정을 시켜 놓은 조례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거는 관계 법령이 기본적인 법 자체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예.

○위원장 안정근 그거는 상위법, 이것은 지방의회 조례.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녹였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녹였어야 된다.

○위원장 안정근 예, 상위법령상에는 그렇게 어쨌든 그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케이스가 요즘은 늘어나고 있으니 남성들의 피해들도 늘어나고 있으니 같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방조례로 내려왔을 때는 굳이 상위법을 다 따라서, 그 법률을 따르지만 지방조례는 이 부분 좀 녹여줬으면 참 예쁜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상담소에서 하는 업무로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녹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솔직히 남성들은 이 조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 안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홍보를 할 때는 여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도 포함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 예, 저희가 열심히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홍보하실 때는 그런 부분 유념해서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문구가 정말 중요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비영리단체 등의 밖에 법인이나 단체가 속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과장님께서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등’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바뀌고 다른 분이 해석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른 도와 똑같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이 문구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등’이라는 해석이 과장님은 아셔서 그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등’이라는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때는 비영리단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구는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잠깐만요.

○천철호 위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잠시만요.

○천철호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위원님 그 사항이 사실은 6조2항에도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에 ‘등’이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 ‘등’ 해석을 좀 구체적으로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이거로만 하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담소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상담소들이거든요, 보호시설하고.

그런데 설치기준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는 단체, 개인’도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천철호 위원 등을 빼고 구체적으로 썼으면,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4항 전담 중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립·자활’을 ‘자립·자활·주거취약’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수립(안)

가.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11시2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두 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문화유산과장 유정순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으로 총 두 필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사업 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주와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으며 매입 시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과지출 방지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정부지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 취지에 맞게 현충사 앞 사

거리와 은행나무길 사이에 있는 토지 중 총 31필지 6856㎡의 토지를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로 변경하고 그 중 시유지 4필지를 제외한 27필지 5793㎡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곡의 집 설계 및 건축 등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이게 기존에 꽤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서당과 통곡의 집이 그렇게 진행되어서 기존의 절차들이 많이 이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설 계획 결정이 기존부지로 이루어졌나요?

기존부지에,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오늘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가 아니고,

○김미성 위원 기존부지.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기존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루어졌고 실시설계도 이 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건물을 만들어 낼지도 이루어졌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중지상태입니다.

지금 설계중지, 공모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고 현재로는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중지는 언제쯤 됐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지금 10월 초 쯤에 지금,

○김미성 위원 부지를 변경해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중지를 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예.

○김미성 위원 실시설계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금년에 공모가 완료가 됐고요.

자료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5월에 설계공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심의위

원회도 심의가 완료가 됐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완료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았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받았습니
다.

○김미성 위원 다 기존부지로 받아놓
은 것을 그럼 언제부터 이게 변경 결정
이 이루어진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부지
매입이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 보니 그
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고 절대
로 본인은 매도의사가 없어서 소송까지
갈 계획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금
년 8월 쯤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 고민
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이게 참 행
정이라는 게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으면 이렇게 기존 절차들을 이행
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렇게 부지 매입이 소송까지 갈 사항이
다, 이런 부분을 지금 와서 말씀을 하시
는게 그전에도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드리고 한 건데 그리고 관련해서 용역
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세워드리고 한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변경하겠
다고 하고 기존 절차들은 다 싸그리 무
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맞나,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부지에 대해
서 토지 매입 의사라든지 국유지도 포
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부
처랑 사전협의를 완료가 됐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국가 부
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이 크게 어렵

지 않을 것으로,

○김미성 위원 사전협의를 완료 됐는
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협의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토지 매입에 대한 협
의는 이루어졌나요, 사전협의를?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사전협의 완
료는 되지 않았습니
다.

○김미성 위원 사전협의 없이 지금 이
부지를 변경하고 기존에 시설계획 결정
도 다 이루어지고 실시계획도 이루어지
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
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는 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는 많
으시는데 본 위원이 계속 본 결과는 뭐
냐면 땅을 가지고 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하다가 안 되면, 통곡의 집을 계
획했던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계획했다가 여기가 진입로가
좁 저기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이순신 테
마놀이터가 당초 계획,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때는 그걸로
추진을 하다가 진입로가 위험하다고 해
서 그거는 취소를 하고 그런데 통곡의
를 집을 하는데를 보니까 땅값이 상승

해서 못 사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오고, 행정이 너무 왔다갔다 해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토지주하고 먼저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우리가 산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땅 주인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거 변경승인 해 줘도 여기 지금 토지주하고 상의 없었 다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여기서 또 올라가요, 못 사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왜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하시는지.

이런 거 있어서 조금 더 아주 계획적 이어야 돼요.

지금 아산시가 어려운 게 뭘니까?

뭘 한 번 하겠다고 의회에서 해 주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어요?

변경해 주면 땅 살 자신 있으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이거 땅 못 사요.

벌써 몇 백미터 앞에 있는 게 땅이 그렇게 해서 땅값을 300만 원 달라고 했나요, 평당?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그 정도…….

○천철호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저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우리가 접촉하면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이쪽은 은행나무길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고요.

○천철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돼.

일반 시민들은 ‘저쪽에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이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문화유산과가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사업 부서하고는 정말 달라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될 게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이렇기 때문에 더 테일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뀔 수가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현상변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문화유산과는 특히 다른 실과보다 더 많

고,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이기에 위원 어려움이 많은 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뭔가 과장님께서 약간 깨닫지 못한 게 계신 것 같아.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제가 이런 말씀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저희가 227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246회 정례회입니다.

그 많은 시간동안에 여러 가지 실시설계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송곡 땅값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시내 중심부만큼 땅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하고의 사전의 얘기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언제 땅팔라고 했느냐? 시에서 무조건 매입하려고 한 거지’라는 생각 밖에 그분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여기 사유지가 다 들어가 있고 국도 사업비 여기가 땅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마 거기는 뭐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야 쓸모도 있는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팔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변경신청을 하려고 말씀을 올리려 그러면요,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땅 매입할 때 쉬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50% 정도는 확보가능하다라고 다 가계약으로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답니까, 예?

그러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 정말 실망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1년 기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됐던 부분이 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몇 년이죠, 지금까지?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2021년에, 지금 2년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몇 년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2년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2년 됐죠?

그럼 2년 앞도 지금 못 보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사업부지를 선정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초 사업부지를 선정한 이유 그리고 현재 지금 신청, 공유재산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최초 사업부지, 지금 변경된 상황인데요.

최초 사업부지는 사실은 주차장을 맨 처음에 최초 사업부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안 된다고 해서 앞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박효진 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초 선정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라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가 선정이 됐고 2차적으로 변경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 부지가 원래 이순신놀이터, 테마놀이터로 하기로 했던 부지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통곡의 집으로 변경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최초 사업부지는 아무래도 접근성도 좋고 해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현충사에서 가깝고 그래서 부지를 선정했던 거고요.

○박효진 위원 선정 전에 어쨌든 아까 다들 똑같은 말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3년 뒤에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 증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온양2동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오락가락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지주한테 증설하는 부분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이 2년, 3년 뒤에 딜레이 될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비싸졌으니 옮기겠다?

이건 굉장한 행정력 낭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시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가장 이전을 생각했던 부분은 부지 단가가 비싸졌다는 부분하고,

○박효진 위원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 인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행정력은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 시간도 더 소요가 되고 낭비된 부분,

○박효진 위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2년, 3년 앞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는 면적도 저희가 봤을 때 하고자 하는 부지보다도 면적이 크고,

○박효진 위원 단순히 면적이 넓어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위치도 먼저 부지 못지 않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위치가 백의중

군길의 통곡의 집과 길이 백의중군로랑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 부지가?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현충사랑 가까운 부분도 있고요.

○박호진 위원 단순히 가까운 게 아니라 백의중군로라는 그 길이 연결성에서 맞냐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연결성에서 저희가 맞다고 봅니다.

○박호진 위원 앞으로도 또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바꾸시겠네요, 자리가?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소요기간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다시 또 부지를 바꾸거나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호진 위원 지금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사업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8년까지, 당초는 2025년이었는데 2028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호진 위원 늘어난 이유는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중앙에서 지금 사업기간이,

○박호진 위원 토지 선정도 안 됐는데, 뭘.

토지 선정이 됐지만 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땅이 있어야지 뭘 시작하는데 계획만 자꾸 잡으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과장님 문화유산과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 지금 사업부지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게 뭐냐면 과장님 말씀은 다른 거가 아니야.

땅값이 올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땅값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땅값 대비해서 건축비는 안 올라갑니까?

지금 1년에 건축비가 보통 15%에서 20%씩 이상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 들었어요, 저희는.

그러면 이 부지에다가 지상 2층하고 연면적 987㎡를 지으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20%, 25% 만약에 땅값이 오르는데 비례해서 건축비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건축비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부지로 따지면 땅값이 여기는 그렇게 저거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당초 예산이 53억 정도 되는데서 58억으로 또 뛰어 올랐어요.

앞으로 이거 28년까지 잠재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비용은 훨씬 더 건축비가 올라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추진력 있게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

제가 감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서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 문화유산과가 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진짜 인력이 부족해요.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디테일하게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만 일사천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부족된 점이 너무 많다.

사업은 너무 크고 사업량도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밀린 게 통곡의 집 뿐만이 아니라 수두룩 뽁뽁이에요.

이런 인력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토지에 대한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배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면적이?

이거에 대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그 부지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절차에 대한 과정, 우리에 대한 문화유산과에 대한 의지, 추진력, 행정 낭비, 이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추진하는 업무들이 계속 절차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존경하는 이기에 위원님께서 건축비 말씀하시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통곡의 집 같은 경우는 기준에 관광진흥과에서 이순신놀이터 부지로 생각했던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보면 사실 저지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부지가 다른 지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공사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거기다가 흙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토목공사 비용이 어떻게 변경된다,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부지 확보 후에 설계를 다시 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인근 공사장에서 흙을 받고 한다고 하면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참 이 지점이 조

금 아쉬운데요.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리셨으면 부지를 바꾼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비용이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추계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든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 정보 자체가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정보를 준비하고 자하는 생각이 과에서는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부지를 변경하면 문체부에도 사업 계획 승인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사업계획 변경승인,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문체부랑 혹시 상의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저희가 도하고 지금 문체부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김미성 위원 긍정적으로 이 부지를 바꾸는데 대해서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예.

○김미성 위원 언제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11월 초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10월인가 11월인가, 이거 공유재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도하고 문체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쪽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이런 정보를 갖고 문체

부에서도 승인을 해 줬을까라는 도에서도 승인을 해 줬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도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문체부하고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순신테마파크는 관광진흥과에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통곡의 집을 지으려고 한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충효애 사업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이순신의 것을 충효애 사업이 있는 데서 보고 통곡의 집에서 같이 연계성 있게 보려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 처음에.

테마파크는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다 넣었고.

그런데 지금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처음 계획은 그렇게 잘 세워놓고 추진이 안 돼서 왔다갔다하면 정말 에너지만 낭비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한 토목비, 다른 데 공사하는 흙 갖다 놓는다고 그게 토목이 다 되는 것 같아요?

토목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이 수반돼서 보고서에 왔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아, 그래도 노력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면 저희가 이걸 통과시켜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되면 그때 보고한다 그러면 제가 가장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통과시켜주면 그제서야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이런 행정이 어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중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부지 매입의 건으로 총 9필지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으며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전체 9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잔여 4필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 결과 수용불가 입장이며 수용하더라도 토지 매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과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보고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감정평가를 보고하자’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쪽도 저희가 현상변경 허가 1구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토지들은 활용도가 농지 이외에는 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는 어쨌든 시의 행정의 입장이고 그들한테는 또 다른 입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인문학서당이 변경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국도 45호선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확장 부지랑 맞물리거나 인접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바로 인접하긴 했는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도로부지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확장되는 부지를 다 고려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고려했습

니다.

○김미성 위원 아, 접도구역이 그럼 적용되는 건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 이것도 기존 인문학서당의 경우에도 행정절차가 다 이행됐던 부분인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다시 변경을 하는,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갔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김미성 위원 아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거의 시작하고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진행된 않았습니

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위원장님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가결하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따오시느라고 생을 진짜 많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아산에서 토지를 갖고 있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랬는데 사업을 잘 따오셨는데 토지 매입 부분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토

지 매입 부분 역시 변경안이 없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들 토지 매입 부분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는 데요.

이번을 계기로 삼으셔서 다음에 사업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입니다.

의안번호 5363호, 아산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가구별 지원사업 범위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확대하는 내용과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원금의 편리한 집행을 위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항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63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 이게 지금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는 부분을 새롭게 신설했다는 부분이 이 조례의 가장 큰 포인트일 텐데 그렇게 신설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일단은 현금하고 지역화폐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은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지원금에 대한 근거자료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렵고 지역화폐를 하게 된 동기는 지원하는 금액이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다시 한번 현금하고 지역화폐, 두 가지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타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지자체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현금성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지역화폐가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뒤에 참고자

료로 붙인 거 보면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깐 전부 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정하신 이유가, 사실 이렇게 두 개로 정해 놓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다 현금으로 받지 지역화폐로는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개정이 되고 나면 공고를 할 거거든요.

○**이기에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게 되면 현금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폭넓게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할인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지역에서 그거를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그런 안을 가지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에 위원** 만약에 지역화폐로 받아가시면 참 좋죠.

아산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참 좋은데 대부분이 그래도 아마 현금으로 거의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는 80%는 현금, 20%는 지역화폐,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고 나면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8 대 2라든가 7 대 3이라든가 그걸 정해 가지고 주민협의체 하고 협

의해서 유두리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렇게 하면 관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364호,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10조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에서 제17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26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25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연간 약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사항, 입법예고, 성별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64호,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걸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저희 시도 수립 중에 있고요.

여러 지자체들이 해당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는 현재 수립이 됐고 광역은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국가에서 하는 거 잘 살펴보고 이거 잘못하면 유아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정성들여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사실 막연하긴 하지만 이걸 꼭 있어야 되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적극 응원하지만 만발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기본법에 따른 조례가 상당히 아산시는 늦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이걸 선제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의미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실과 차원에서는 굉장히 대응이 늦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어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부칙을 보면 조례 시행 전의 경우에는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와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서 행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 두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다듬어 나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부칙 2조에 따라 기존에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그다음에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기본 조례가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될 때 큰 부침이 없도록 특히 센터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과장님 사실은 저희 기본 조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에 위원** 뒤에 계신 맹호림 팀장님께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본 위원이 발의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여러 가지 절차와 조건들이 되게 상위법 자체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올리는 게 낫다, 이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이 있었고 상위법이 약간 축소돼서 내려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아산시가 일찌감치부터 대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도 매우 기본 조례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걸 검토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조 보면 차 없는 날 등 운

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이기에 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흠, 짝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강제성을 띠고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 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 단체들도 함께 이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차 없는 날 등 운영에 대한 이 15조에 대한 것도 수립을 철저히 하셔서 아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각종 기관 단체라든가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례가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6조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차, 태양광, 수소전기자동차, 저희들이 보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026년부터는 바이오 가스를 저희들이 안 하면 과태료를 시에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가스에 대한 부분도 아산시가 바이오합에너지 거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2026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셔서 친환경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이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하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다루는 범위가.

조례에서 다루는 범위가.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정책 수립이라든가 방향성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 아마 이거 잡으실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맞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아,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들인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안정근 결과치가 언제 나오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최종 보고회는 12월 7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올 12월 7일에 나오시는 거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 위원회를 꾸리시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위원회는 내년 초에 꾸릴 예정이고요.

○위원장 안정근 예.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충청남도 계획이 내년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확정은 내년 4월 이후에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충청남도는 이미 발족을 해서 이걸 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맡겼고 내년 4월에 나오는데 저희는 12월 7일 정도에 탄소중립이 나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럼 이 두 개를 병합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더 좋은 방향성으로 길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어디 한쪽으로 편중돼서 짜여지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전문가들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제6조 위원 임기보면은요, 임기가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연임이 몇 회 횟수로 정해진 거는 기본 조례에 따라서 1회 연임인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1회 연임이 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임이 지속적으로 될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지금 조례 문구상으로는 연임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 내용대로 하자면 2년 임기가 2년이고 2년 뒤에 전부 해산을 한 다음에 다시 위촉해야 되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다시 위촉하게 되면 전에 임기였던 사람이 다시 위원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저희가 국가 탄소중립위원회는 한 번을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거를 저희도 한 번만 연임을 하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했는데 저희 시에 탄소중립의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분들이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한 번 1차에 구성을 해 보고 한번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계속 연임이 필요하다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검토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전문 위원이 몇 명이나 아산시에 계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실태조사가,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현재는 20명,

○김은아 위원 아직은 해 본 적이 없

으니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추후에 제가 말씀했던 당부드린 부분은 한번 고심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시립도서관장 성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65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는 배방읍 공수리 소재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이 24년, 내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같은 공수리 소재에 기존 배방도서관과 신축하는 도서관을 통합하고 서비스 기능을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존 배방도서관과의 통합운영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개관 도서관을 배방도서관으로 명명하고 기존 배방도서관은 학습동으로 조정하고자 별표1에 아산시 배방도서관 위치에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 위치인 배방읍 모산로 182-14를 추가하고 비고란을 추가하여 본관, 학습동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 사전심사는 비대상이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불입과 같이 개선사항 없음으로 절차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65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예, 지금 본관하고 학습동하고 나뉘져 있는 부분인데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한 2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250m면 아이들이 가기엔 조금 먼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먼 거리라고는 여겨지진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거리가 일정 거리가 넘어가버리면 본관이나 학습동이라는 취지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학습동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는 배방도서관 2층에 열람실로 해서 기존에 알고 계신 도서관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동 전체에 기능으로 활성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라 공부를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오고 나머지 기존 자료실이나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그리고 도서를 빌려서 잠깐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새롭게 개관하는 도서관에 충분히 다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는 불편,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칭을 어쨌든 외부에다가도 표시가 되게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관장님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김은아 위원 추진도 해야 되고 건립도 빨리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일정이 있으실 텐데요.

페이지 133페이지 보면은요,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추계 내역을 좀 뽑아놓으셨어요, 관장님께서.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김은아 위원 여기서 보면 자료 구입비를 매년 똑같이 1억 정도를 계속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어떤 걸 계획해서 가지고 이렇게 구입비를 1

억 원씩 해 놓으셨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물론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동안 필요했던 수요,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개선해서 계속 프로그램은 보완, 발전해 나갈 텐데요.

그런 거는 그때 그때 진행할 사항이고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강사비 부분을 평균을 내서 일괄적으로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는 각종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료 구입비만 지금 따로,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아, 자료 구입비, 예.

자료 구입비 같은 경우는 콘텐츠라고도 표시가 돼 있지만 자료라고 하면 도서, 장서 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은아 위원 매년 5000원씩 사시겠다는 얘기시죠?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전체 도서관에 대한 거죠.

○김은아 위원 전체를,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전체 도서관에 대한 거죠.

이 앞부분에 있는 거는 현재 도서관이 5개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신축 쪽에 있는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있고요.

9개,

○김은아 위원 배방복합센터랑 배방도서관만이 아니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예.

○김은아 위원 이 부분은 좀 추후에

논의를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동이라고 지은 명칭은 누구에 의해서 학습동이라고 지어진 건가요, 명칭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은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 학습동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예쁜 단어가 없었을까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인데, 예.

○김은아 위원 기존에 배방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배방도서관은 현재 2층에 열람석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 형태로 와서 공부할 하는 공간이고 약 170정 정도 있는데 그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한 개념으로 1층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칸막이 1인 형식의 공간이 아니라 카페 형식으로 해서 1인이 있을 수도 있고 2인, 4인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그 안에 혼합형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1층을.

전체를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활용도가 많이 광범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습동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저기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뭔가 와닿을 수 있는 명칭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쭙볼게요.

학습동이 보니까 배방 쪽에 인원이 다섯 명 배치가 되는데 학습동에도 인원이 배치가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아, 여기서 표기한 5명은 학습동에는 배치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학습동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아, 있습니다.

학습동은 저희가 경비인력도 들어가고 해서 물론 관리는 되고 있는데 사서나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련된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는 도서관에 있을 거고요.

물론 왔다갔다 일처리를 하겠지만 학습동, 현재 있는 배방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서를 대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학습 공간과 동아리실 같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한 명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에 따라서 그 시설물에 대한 시민

들의 사용 용도가 좀 달라져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를 그냥 시민들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잘 가꿔질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시범사업 해 보시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상주하는 인력은 한 분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지금 저는 만약에 이거를 별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관장님께서도 별도로 아니고 원래 배방도서관하고 신축하는 도서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이기에 위원** 명칭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별도로 만약에 놓고 보면 잘못하면 하나가 뒤쳐질 수가 있어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예.

○**이기에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서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곳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학습동?

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학습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용히 더, 아마 독

서실 개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 동아리까지도 거기서 같이 운영을,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아, 동아리실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동아리실을 갖고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동아리실을 빌려주는, 예, 그런 형태입니다.

○**이기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학습동에 동아리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예, 동아리실도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도서관은 동아리로 맺어지는 센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이 되게 커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도 동아리 모임을 활발하게 할 것 같으면 학습 동아리방이라든지 학습 동아리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습동만 하면 동아리가 조금 처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그런데 그 저희,

○**이기에 위원** 다른 데는 동아리방이 동아리실이 별도로 도서관마다 다 그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모든 도서관 새로 개관하면 동아리실은 기본적으로

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통의 동아리실은 동아리 관련된 독서 동아리 이런 프로그램을 도서관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같은 배방,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여형태를 통해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실입니다.

○이기에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만 대여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예.

○이기에 위원 공간 주고, 제가 봤을 적에는 배방 같은 경우에는 잘만 운영하면 동아리가 되게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도서관 카페를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다른 타 시군도.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강원도도 엄청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냥 사무실로만 세미나실처럼 빌려주는 식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운영해 나가시다가 만약에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고 동아리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개관되는 도서관과 서로 프로그램, 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효과를 배가 시

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기에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방원
주 무 관	김형선

○출석 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보건소장	장동민
평생학습센터소장	오세규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환경보전과장	장석봉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시립도서관장	성은숙